

의안번호	2210900
의 퇴 인	송재봉 의원
회 답 일	2025. 8. 13.
추계번호	25A331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¹⁾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의8 신설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그 전문가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복사, 장치의 작동·계측·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전문가를 소송 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제1항) 법원은 기술의 난이도·복잡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 제1항에 따른 전문가로 지정할 수 있음(제2항)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특허법」 제15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4.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5.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 6.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함(제4항)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민사소송법」의 증거보전 절차에도 활용할 수 있음(제13항)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함(제15항)	재량규정

- 1) 개정안은 제14조의10을 신설하여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증거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자료보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소송비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규정은 재정수반요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함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14조의11 신설 (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 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 포함)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음(제1항)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여야 함(제3항) 1.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사람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①사건의 표시, ②출석한 당사자 등의 성명, ③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 요지, ④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신문한 경우 그 요지 등이 기재된 서면인 진술절차요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제5항)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제8항 제5호)	재량규정
3	안 제14조의12제3항 신설 (변호사 선임 명령)	법원은 제14조의11제1항에 따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음(제1항) 법원은 제14조의11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제14조의11제1항에 따른 신문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17조의3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②제14조의11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봄	의무규정
5	안 제18조의4제3항 신설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14조의8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무규정
6	안 제18조의6 신설 (자료보전명령 위반죄)	제14조의10제1항 ²⁾ 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무규정
7	안 제18조의7 신설 (위증죄)	①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법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이 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항) 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한 진술인이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8	안 제20조제2항 신설 (과태료)	정당한 이유 없이 제14조의8제10항 ³⁾ 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함 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2. 법인의 임원·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의무규정

2) 안 제14조의10(자료보전 명령 및 그 효과) ①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지 않도록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하 후단 및 각 호 생략)

3) 안 제14조의8(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⑩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14조의8 신설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4조의11 신설 (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3	안 제14조의12제3항 신설 (변호사 선임 명령)	
4	안 제17조의3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5	안 제18조의4제3항 신설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6	안 제18조의6 신설 (자료보전명령 위반죄)	
7	안 제18조의7 신설 (위증죄)	
8	안 제20조제2항 신설 (과태료)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부정경쟁 행위⁴⁾,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⁵⁾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⁶⁾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이하 “영업상 이익 침해 소송”)에 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①전문가를 지정하여 증거와 관련된 조사를 하도록 하고, ②양 당사자가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 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③개정안의 내용에 수반하여 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 파. (생략)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이하 이 조에서 “지리적 표시”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부정경쟁행위 이외에도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라 하지 아니하는 상품(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상품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진정한 원산지 표시 이외에 별도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2. 지리적 표시를 번역 또는 음역하여 사용하는 행위

3. “종류”, “유형”, “양식” 또는 “모조품” 등의 표현을 수반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②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또는 이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인도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 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 바. (생략)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개정안에는 재정지출의 증가와 재정수입의 증가 요인이 모두 있으며, 이를 조문 및 내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재정지출의 증가**는 전문가 증거조사 도입에 따른 인건비와, 당사자 간 신문 제도 도입 및 이를 위한 영상녹화를 하는 데 따른 공무원 인건비 및 장비 구입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
 - **안 제14조의8**에 따라 전문가를 지정하여 증거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전문가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⁷⁾, **안 제14조의11**에 따라 당사자 간 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녹음 및 영상녹화가 가능한 변론준비실과 해당 절차의 실무를 운영할 법원사무관 등의 인력이 필요하므로 공무원 인건비와 함께 변론준비실 내 영상녹화시설 장비 등의 구입비가 발생할 수 있음
- **재정수입의 증가**는 신문절차의 방해 및 전문가 조사의 거부·방해·기피 등에 따른 과태료, 자료보전 및 비밀유지 명령 위반 등에 따른 벌금 수입으로 인해 발생
 - **안 제14조의11제8항제5호, 제14조의12제3항 및 제20조제2항**은 과태료, **안 제17조의3, 제18조의4제3항, 제18조의6 및 제18조의7**은 벌금형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를 징수할 경우 재정수입(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

[표] 개정안에 따른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증가 요인

구분	내용
재정지출 증가	· (제14조의8) 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 기술심리관·조사관 인건비 · (제14조의11제1항·제3항·제5항) 당사자에 의한 신문: 법원공무원 인건비, 영상녹화 시스템 도입 등에 따른 장비 구입비
재정수입 (세외수입) 증가	· (제14조의11제8항제5호·제14조의12제3항) 신문 절차 방해 및 변호사 선임 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제17조의3) 개정안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와 당사자 간 신문에서 진술을 기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 및 벌금·과태료 부과 · (제18조의4제3항·제18조의6·제18조의7) 비밀유지·자료보전 명령 위반 및 위증죄에 따른 벌금 부과 · (제20조제2항) 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7) 안 제14조의8제15항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동일한 체계를 가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890호,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변리사 등을 전문가로 지정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할 수 있겠으나, 공무원인 기술심리관 또는 조사관을 전문가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공무원 인건비이므로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증거조사를 하는 전문가가 기술심리관 또는 조사관으로 지정될 때 발생할 공무원 인건비를 중심으로 살펴봄

- 개정안에 따른 순 재정부담은 재정지출의 증가액에서 재정수입의 증가액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 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와 당사자 간 신문에 따른 법원별 필요 인력 및 장비, 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건수 및 액수 등을 알 수 없어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재정지출 증가액의 경우 영업상 이익 침해소송을 관할하는 각 법원별 기술심리관 및 조사관 증원 수요와 영상녹화시스템 등 장비 수요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안 제14조의8에 따라 법원이 증거조사를 위해 전문가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의 자격이 기술심리관 및 조사관인 경우에만 공무원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법원이 지정할 전문가(기술심리관 및 조사관, 전문심리위원, 변호사, 변리사 등)의 자격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
 - * 비용추계를 위하여 증거조사를 위한 전문가의 자격을 기술심리관 및 조사관으로 한정하더라도, 각 법원별로 기존 인력으로 수행 가능한 부분과 신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증원 필요한 기술심리관 및 조사관의 수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안 제14조의11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운영하면 해당 절차의 실무를 담당할 사람이 법원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인건비가 소요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공증인 등) 수수료, 일당 및 여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법원이 녹음 또는 영상녹화 및 진술절차요약 등을 명할 사람의 자격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
 - * 비용추계를 위하여 당사자 간 신문 절차 실무를 담당할 사람이 법원공무원인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개정안에서 해당 법원공무원의 직급을 한정하지 않고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규정하여 해당 직무를 담당할 법원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영상녹화시스템 도입에 따른 장비 구입비의 경우 기존 장비를 고려한 법원별 컴퓨터 및 영상녹화시설 등 장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재정수입 증가액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금전 제재를 받게 될 의무 위반행위의 건수와 1건당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액을 바탕으로 산출될 것이나, 현재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므로 구체적인 재정수입 증가 규모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에 따라 영업상 이익 침해소송에 대하여 전문가 증거조사 및 당사자 상호간 신문 제도를 도입하는 데 따른 재정지출에서, 관련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등을 신설하는 데 따른 재정수입을 차감한 추가재정소요(순 재정부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